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수련과정 및 자격검정 시행세칙 추가 개정

1.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한국부부상담학회 부부상담전문가,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신규 자격취득 대상자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 / 한국부부상담학회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 /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 /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6조에 “연구실적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및 자격검정 시행세칙 추가 개정안]

구 분	수련감독급	1급
가족상담전문가 부부상담전문가 내면아이상담전문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게재 1편 또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심사 2편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게재 1편 또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심사 1편

시행일 : 2020. 01. 04

(※유예 기간 : 2020. 03. 02 ~ 07. 31)

2.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한국부부상담학회 부부상담전문가,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자격갱신 대상자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자격규정 제17,18,20조 / 한국부부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5,16,18조 /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자격규정 제15,16,18조에 “연구실적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자격갱신 추가 개정안]

구 분	수련감독급	1급
가족상담전문가 부부상담전문가 내면아이상담전문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게재 1편 또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심사 2편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게재 1편 또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심사 1편

시행일 : 2020. 01. 04

(※유예 기간 : 2020. 03. 02 ~ 07. 31)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사 시행세칙 추가 개정안]

1.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1급

제3장 자격심사 청구

제7조(자격심사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한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본 협회 소정 양식)
- 2) 1000시간 이상의 상담자 경험 확인서
- 3) 2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슈퍼비전) 확인서(개인/집단 슈퍼비전 구분)
- 4)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
- 5) 상담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
- 6) 내담자 경험 확인서
- 7)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연구실적자료 게재 1편 또는 심사 2편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

- 9)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
- 10) 3편의 상담사례발표 전문
- 11) 가족상담 3사례를 제출하되 각 사례별 1회기 완전 축어록과 슈퍼비전 내용의 요약본을 제출하고, 해당 회기의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를 제출한다.

2. 가족상담전문가 1급

- 1) 심사료와 자격심사 응시원서
- 2) 500시간 상담자 경험 확인서
- 3) 55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슈퍼비전) 확인서(개인/집단 슈퍼비전 구분)
- 4) 집단상담 참여 확인서
- 5) 상담사례발표회 및 집단연수회 참여 확인서
- 6) 내담자 경험 확인서
- 7) 상담관련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8)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2매
- 9) 1편의 상담사례발표 전문
- 10) 가족상담 1사례를 제출하되 1회기 완전 축어록과 슈퍼비전 내용의 요약본을 제출하고, 해당 회기의 녹음 혹은 녹화 테이프를 제출한다.

11) 연구실적자료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

- 본 시행세칙(개정된)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자격관리위원회

2.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1급

제3장 자격심사청구

제6조 (자격심사 청구) 본 학회의 회원으로써 다음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여 한국부부상담학회에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부부상담사 수련감독(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 2) 수련감독 부부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증
- 3) 300시간 이상의 부부상담실시 확인증
- 4) 110시간이상의 지도감독(슈퍼비전)확인서
- 5) 부부상담전문가자격증 사본
- 6) 부부상담사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 참석 확인증.
- 7)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1부
- 8)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9)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1매

10) 연구실적자료 게재 1편 또는 심사 2편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

2. 부부상담사 1급(부부상담전문가)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 2) 부부상담사 자격필기시험 합격증
- 3) 115시간 이상의 부부상담실시 확인증
- 4) 부부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 5) 중점연구소의 커풀스워크샵 보조치료사 3회 이상 보조경험확인증.
- 6) 협회가 인정하는 집단상담 45시간 이상 이수확인증.
- 7) 부부대화법, 부모-자녀대화법(PC) 및 행동수정요청대화법(BCR) 총 3가지 테잎 통과 확인증.
- 8) (사)한국가족상담협회에서 인정하는 부부상담사례 참석 2회, 발표 1회 확인증
- 9) (사)한국가족상담협회에서 인정하는 집단연수회 참석 확인증.
- 10)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1부외
- 11)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12)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1매

13) 연구실적자료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

- 본 시행세칙(개정된)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부부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3.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수련감독, 1급

제3장 자격심사청구

제6조 (자격심사 청구) 본 학회의 회원으로써 다음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여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에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내면아이상담사 수련감독(내면아이상담전문가 수련감독):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 2) 수련감독 내면아이상담사 자격필기시험 합격증
- 3) 300시간 이상의 내면아이상담실시 확인증
- 4)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그룹인도자로소 6회 인도 확인증
- 5)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참석 이수확인증
- 6) 50시간 이상 슈퍼비전 이수(개인/그룹)확인증
- 7) Sup of Sup 30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 8) 내면아이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 9)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주최 통합상담사례발표회 발표 1회 이상 이수 확인증,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주최 혹은 학회 인증기관 주관 사례발표회 3회 이상 발표 확인증
- 10)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집단연수회 3회 이상 참석 확인증 및
ICCFR 2회 이상 참석 확인증(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주최 포함)
- 11)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1부
- 12)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13)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1매
- 14) 연구실적자료 게재 1편 또는 심사 2편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

2. 내면아이상담사 1급(내면아이상담전문가)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 2) 내면아이상담사 자격필기시험 합격증
- 3) 115시간 이상의 내면아이상담실시 확인증
- 4) 내면아이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 5)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그룹인도자로소 3회 인도 확인증
- 6) 집단상담: 영성과 내면아이치유 참석 이수확인증
- 7) 30시간 이상 슈퍼비전 이수(개인/그룹)확인증
- 8)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주최 통합상담사례발표회 참석 4회 이상 이수 확인증,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주최 혹은 학회 인증기관 주관 사례발표회 1회 이상 발표 확인증
- 9)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집단연수회 2회 이상 참석 확인증 및
ICCFR 1회 이상 참석 확인증(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주최 포함)
- 10)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1부외
- 11) 외국 전문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12)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3x4cm) 1매
- 13) 연구실적자료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

- 본 시행세칙(개정된)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등록 및 갱신 추가 개정안]

1.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1급

제5장 자격 등록 및 갱신

제17조 (자격의 갱신)

가족상담전문가는 취득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한국가족상담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갱신시 협회의 자격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갱신에 따른 제반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제6장 자격의 유지 및 제한

제18조 (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유지)

1. 가족상담전문가(수련감독):자격 취득 후아래의 각항을 이행해야 하며,만일 각항의모든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상담사례 수련감독 활동과 상담교육,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1년간 1회 이상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5) 자격 갱신을 위해 연구실적자료로써,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게재 1편 또는 심사 2편)

2. 가족상담전문가(1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가족상담전문가 1급으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연 1회 이상 본 협회가 주관하는 상담사례발표회 또는 학술발표회에 참여한다.

3) 상담교육, 가족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4) 매 1년간 1회 이상 가족상담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집단연수회에 참여해야 한다.

5) 자격 갱신을 위해 연구실적자료로써,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제20조 (자격의 제한) 자격 취득 후에 위의 제17, 18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1.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단, 본 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2. 가족상담전문가 1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단, 본 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3. 가족상담전문가 2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당해년도부터 회복된다. 단, 정지된 기간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가족상담전문가 3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당해년도부터 회복된다. 단, 정지된 기간의 수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 본 자격규정(개정된)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자격관리위원회

2. 부부상담전문가 수련감독, 1급

제5장 자격등록 및 갱신

제15조 (자격의 갱신) 부부상담사는 취득 시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한국부부상담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사)한국가족상담협회에 자격증을 갱신을 요청해야 한다.

제6장 자격의 유지 및 제한

제16조 (부부상담사 자격 유지)

1. 부부상담전문가(수련감독):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 2)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사례 지도 및 감독과 상담교육 실시한다.
 - 3) 연 1회 이상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주관하는 집단연수회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 4) 매 1년 이내에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1회 이상 참여해야한다.
 - 5) (사)한국가족상담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 6) 자격 갱신을 위해 연구실적자료로써,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게재 1편 또는 심사 2편)

2. 부부상담전문가(1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부부상담전문가 1급으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3) 연 1회 이상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주관하는 집단연수회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4) 매 1년 이내에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1회 이상 참여해야한다.

5) (사)한국가족상담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6) 자격 갱신을 위해 연구실적자료로써,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제18조 (자격의 제한) 자격취득 후에 위의 제 15, 16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1. 부부상담사수련감독: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단, 한국부부상담학회 및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2. 부부상담사1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단, 한국부부상담학회 및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3. 부부상담사2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 본 자격규정(개정된)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부부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3. 내면아이상담전문가 수련감독, 1급

제5장 자격등록 및 갱신

제15조 (자격의 갱신) 내면아이상담사는 취득 시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사)한국가족상담협회에 자격증을 갱신을 요청해야 한다.

제6장 자격의 유지 및 제한

제16조 (내면아이상담사 자격 유지)

1. 내면아이상담전문가(수련감독):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수련감독자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 2)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사례 지도 및 감독과 상담교육 실시한다.
- 3) 연 1회 이상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주관하는 집단연수회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 4) 매 1년 이내에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1회 이상 참여해야한다.
- 5) (사)한국가족상담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6) 자격 갱신을 위해 연구실적자료로써,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게재 1편 또는 심사 2편)

2. 내면아이상담전문가(1급):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해야하며 만일 각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 내면아이상담전문가 1급으로서의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된다.

- 1)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 2)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상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 3) 연 1회 이상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주관하는 집단연수회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 4) 매 1년 이내에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1회 이상 참여해야한다.
- 5) (사)한국가족상담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6) 자격 갱신을 위해 연구실적자료로써,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로부터 논문제출 또는 게재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게재 1편 또는 심사 1편)

제18조 (자격의 제한) 자격취득 후에 위의 제 15, 16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1. 내면아이상담사수련감독: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단,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및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2. 내면아이상담사1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단,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및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의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3. 내면아이상담사2급: 정지된 기간 중의 임상수련은 인정치 않는다. 자격의 회복은 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 회비 납부 즉시 회복이 된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보수교육을 이행한 차기년도부터 회복된다.

- 본 자격규정(개정된)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내면아이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